

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2-366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34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03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**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(주)포스코건설(한성희) ②(주)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(정승진)  
③(주)한양엔티(박영태)

나. 전화번호 : ①032-748-2114 ②02-3400-3114 ③02-2201-7870

2. 지정번호 : 신기술 제734호

3. 명칭 : 결정성 폴리머 개질 단층 복합시트를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 복합공법

4. 내용요약

<분야> 건축> 방수 > 복합방수

<기술의 요지>

이 신기술은 인공지반 녹화시 구조부와 식재기반부 사이에 설치하여 방근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으로서, 폴리올레핀계 결정성 고분자인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(LLDPE)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(EVA)를 폴리머 블렌드(Polymer Blend)한 시트에 도막방수처리 부직포를 상부에 일체화하고 접합부는 자동열풍장비로 용착하여 단층(One-layer) 멤브레인층을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공법이다.

<범위>

결정성 고분자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(LLDPE)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(EVA)를 폴리머 블렌드(Polymer Blend)한 시트에 도막방수처리 부직포를 상부에 일체화하고 접합부는 자동열풍장비로 용착하여 단층 멤브레인층을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 방수공법

5. 보호기간 : 2014.06.26. ~ 2022.06.25(8년)

6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8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‘나’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